

제2787호
2020. 11. 10.

발행인: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 양 호
 편집인: 홍보 전 산 과 장 김 건 태
 전화: 3396-4955
 (<http://www.junggu.seoul.kr>)

선	기관의장
람	

구 보

● 자치법규

[규 칙]

제730호 :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2

※ 구보게재를 의뢰한 각 부서에 알려드립니다.
 구보의 게재내용은 중구청 홈페이지<<http://www.junggu.seoul.kr>(행정정보→구보/입법예고) 클릭>에
 게재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 ● 구보게재의뢰 TEL.(02)3396-4955 / FAX.(02)3396-9022/3
 ● 구보는 매주 수요일 발행이며, 발행일 3일 전까지 접수되어야 합니다.
 ※ 구보 게재일자가 문서 시행일이니,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 ※ 구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가지며, 구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.

공람											
----	--	--	--	--	--	--	--	--	--	--	--



자 치 법 규

[규 칙]

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다음과 같이 공포한다.

2020년 11월 10일

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 양 호 (인)

서울특별시 중구 규칙 제730호

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

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4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10호로 하며,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문화재관리에 관한 사항

제18조제14호부터 제20호까지를 삭제하고, 같은 조 제21호부터 제25호를 각각 제14호부터 제18호로 하며, 같은 조 제1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9. 서울메이커스파크(SMP) 및 행정복합청사 추진에 관한 사항

제19조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9. 지역밀착형 생활SOC 추진에 관한 사항

제20조제8호를 삭제하고, 같은 조 제9호를 제8호로 하며, 같은 조 제9호부터 제15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9. 공공디자인 정책 수립 및 집행에 관한 사항

10. 도시디자인 위원회 및 공공조형물 설치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

11. 공공시설물 디자인가이드라인 제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
 12. 복지관, 주민문화공간 등 공간 디자인 및 집행에 관한 사항
 13. 범죄예방 디자인,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에 관한 사항
 14. CI, BI 등 도시브랜드 개발 및 관리에 관한 사항
 15. 구정 홍보물 등 디자인 품질관리 및 표준화에 관한 사항
- 제33조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16. 디지털행정혁신(비대면) 추진에 관한 사항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7조(문화관광과) 문화관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</p> <p>1. ~ 3. (생 략)</p> <p>4. 도서관 운영, 관리 및 독서진흥에 관한 사항</p> <p>5. 관광업무에 관한 사항</p> <p>6. 관광사업계획 승인 및 등록에 관한 사항</p> <p>7. 관광특구 활성화에 관한 사항</p> <p>8. 역사, 문화, 자연자원 등 관광 명소화 지원에 관한 사항</p> <p>9. 관광진흥 및 관광홍보 마케팅에 관한 사항</p>	<p>제7조(문화관광과) ----- -----..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<u>문화재관리에 관한 사항</u></p> <p>5. ~ 10. (현행 제4호부터 제9호까지와 같음)</p>
<p>제18조(도심재생과) 도심재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</p> <p>1. ~ 13. (생 략)</p> <p>14. <u>공공디자인 정책 수립 및 집행에 관한 사항</u></p> <p>15. <u>도시디자인 위원회 및 공공조형물 설치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</u></p> <p>16. <u>공공시설물 디자인가이드라인 제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</u></p> <p>17. <u>복지관, 주민문화공간 등 공간 디자인 및 집행에 관한 사항</u></p> <p>18. <u>범죄예방 디자인,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에 관한 사항</u></p>	<p>제18조(도심재생과) ----- -----.</p> <p>1. ~ 13. (현행과 같음)</p> <p><삭 제></p>

현 행	개 정 안
<p>19. CI, BI 등 도시브랜드 개발 및 관리에 관한 사항</p> <p>20. 구정 홍보물 등 디자인 품질관리 및 표준화에 관한 사항</p> <p>21. ~ 25. (생략)</p> <p><신설></p>	<p>14. ~ 18. (현행 제21호부터 제25호까지와 같음)</p> <p>19. 서울메이커스파크(SMP) 및 행정복합청사 추진에 관한 사항</p>
<p>제19조(주택과) 주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</p> <p>1. ~ 8. (생략)</p> <p><신설></p>	<p>제19조(주택과) ----- -----.</p> <p>1. ~ 8. (현행과 같음)</p> <p>9. 지역밀착형 생활SOC 추진에 관한 사항</p>
<p>제20조(건축과) 건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</p> <p>1. ~ 7. (생략)</p> <p>8. 문화재관리에 관한 사항</p> <p>9. (생략)</p> <p><신설></p>	<p>제20조(건축과) ----- -----.</p> <p>1. ~ 7. (현행과 같음)</p> <p><삭제></p> <p>8. (현행 제9호와 같음)</p> <p>9. 공공디자인 정책 수립 및 집행에 관한 사항</p> <p>10. 도시디자인 위원회 및 공공조형물 설치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</p> <p>11. 공공시설물 디자인가이드라인 제정 및 운영에</p>

현행	개정안
	<p>관한 사항</p> <p>12. <u>복지관, 주민문화공간 등 공간 디자인 및 집행에 관한 사항</u></p> <p>13. <u>범죄예방 디자인,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에 관한 사항</u></p> <p>14. <u>CI, BI 등 도시브랜드 개발 및 관리에 관한 사항</u></p> <p>15. <u>구청 홍보물 등 디자인 품질관리 및 표준화에 관한 사항</u></p>
<p>제33조(기획조정과) 기획조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</p> <p>1. ~ 15. (생략)</p> <p><u><신설></u></p>	<p>제33조(기획조정과) ----- -----.</p> <p>1. ~ 15.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16. 디지털행정혁신(비대면) 추진에 관한 사항</u></p>

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1. 제개정이유

- 새로운 행정수요 대응을 위한 업무신설 및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한 부서간 업무이관에 따라 관련 자치법규를 개정하여, 보다 효율적이고 능동적인 조직운영을 도모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부서간 업무조정에 따른 시행규칙 개정
 - 건축과의 문화재관리에 관한 사항을 문화관광과로 이관
 - 도심재생과의 공공디자인업무에 관한 사항을 건축과로 이관
- 부서 업무신설에 따른 시행규칙 개정
 - 도심재생과 서울메이커스파크 추진 업무 신설에 따른 시행규칙 개정
 - 주택과 지역밀착형 생활SOC 추진 업무 신설에 따른 시행규칙 개정
 - 기획조정과 비대면 디지털행정혁신 업무 신설에 따른 시행규칙 개정